

해외방재정보/ 영국 건축법 개정

金京澤 <자료관리실>

1. 서론

영국(England와 Wales에 관하여, Scotland와 Ireland에는 별도의 건축법규가 적용되고 있음)에서는 1984년부터 1986년에 걸쳐서 건축에 관한 법규제의 방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新 建築法 1984(Building Act)는 그때까지 다른 법규(예를 들면 Public Health Act 등)에 分散하여있던 건축에 관한 법을 통합한 것으로 135條의 조문과 7개의 別表로 구성되어 있다. 第 I 部(第1條부터 第46

條)는 建築規則에 관한 것이고, 第 II 部(第47條부터 第58條)가 뒤에서 기술하는 민간인증에 관한 것이며, 建築에 관한 기타의 조문은 第 III 章에 들어있다.

新 建築規制의 體系는 그림 1에 표시하는 바와 같다. 가장 上位의 건축법 1984 밑에 3개의 建築規則(Building Regulation)가 제정되어있다. 다시 건축규칙을 받아 Approved Document와 「피난방법에 관한 강제적 規準」이 있다. Approved Document는 영국 標準規準(Br-

itish Standards)를 參照하고 있다.

이 改正의 특징은 ① 규칙의 조문이 짧고 간소화되어 지금까지의 仕様書的이었던 것이 성능규정으로 크게 바뀐 것 ② 건축규제의 방법에 지금까지의 地方當局이 행하고 있는 것 외에 민간인증에 의한 것이 추가된 것. ③ 건축에 관한 신청수속이 간략화된 것. ④ 규제 완화등을 들 수 있다.

이하 ①과 ② 및 ③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2. 건축규칙 (Building Regulation) 과 Approved Document

새 건축규칙 1985는 1985년 11월 11일에 발효되었다. 불과 20條와 4개의 別表로 구성하는 것으로 合計 26페이지의 小冊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규칙에 비하여 매우 짧고 項數로는 약 5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기술적인 자세한 것은 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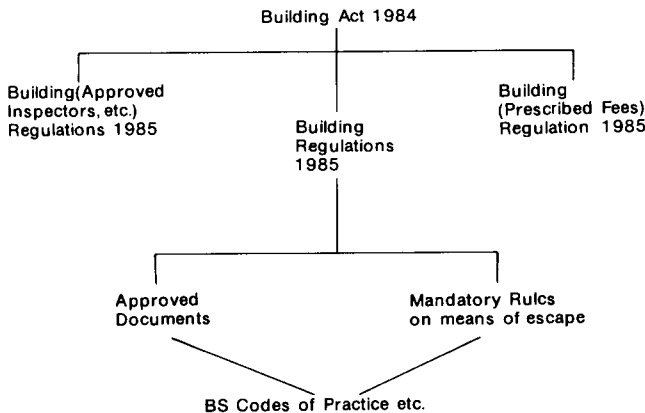


그림 1 Building Control : the legislative scheme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그 槽文의 제목을 列記한다.
* 표시가 붙은 條는 전조문을 번역했음.

第I部：總側

1條 名称 發效 및 適用

2條 用語의 正義

第II部：建築工事의 規制

*3條 建築工事의 正義

3-(1)本規則에서 「建築工事」라는 것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증축

(b)건축물의 대규모 수선

(c)건축물내 또는 건축물에 속하는 규제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증설 또는 대규모 수선

(d)規則 第6條에 의한 工事

(2)의 本規則에서는 다음의 하나인 경우에는 개수는 대규모인 것으로 본다.

(a)그 공사 또는 공사의 일부가 別表1의 A(構造), B1(火災時的 避難), B3(內部火災 擴大) 또는 B4(外部火災擴大)에 규정되어 있는 요구에의 적합에 대하여, 어떤 단계에서 기존 건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b)공사가 건축물의 벽체의 空洞部에 단열재 삽입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c)공사가 건축물의 말뚝 박기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3)本規則에서는 「規制對象시설 또는 設備」라는 것은 1의 G1, G2, G3, G4, H, J, L4 또는 L5에 규정되어있는 要求에 關連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4條 建築工事に 關한 要求

4-(1)建築工事は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a)建築工事は 別表1 및 別表2에 규정하는 關連의 要求性能을 만족할 것

(b)要求性能에 적합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다른 要求性能에 적합하기 위한 건축공사의 어떤 부분을 侵害하지 않을것.

(2)建築工事は 工事完成後

(a)증축 또는 대규모 개수된 어떤 건축물

(b)규제대상 시설 또는 설비, 증설 또는 대규모 개수된 어떤 건축물, 또는 설치, 증설 또는 대규모 개수된 규제대상 시설 또는 설비가 부속하는 어떤 건축물.

(c)어떤 규제대상 설비 또는 시설도 別表1에 규정된 關連의 要求性能에 대하여 影響을 주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條 大規模 用途變更의 定義

6條 大規模 用途變更에 關한

要求

7條 材料와 施工技術

8條 要求의 限度

9條 除外되는 建築物 및 工事

第III部 要求의 緩和

10條 要求의 제외 또는 완화의 권한

第VI部 通和와 計劃圖書

*11條 건축통지의 제출 또는 계획서의 제출(deposit)

11-(1)건축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규모 용도변경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a)규칙 제12조에 정하는 통지를 지방관청에 제출해야하던가 (本條 및 12條에서는 「建築通知」라 부른다) 또는

(b)규칙第13條에 따라서 계획도를 지방관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本條 및 13條에서는 「全計劃圖書」라 부른다.

단, 다음의 各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건축공사를 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공사가

(a)別表1의 B1(화재시의 피난)의 要求항목에 적합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 및

(b)화재예방법 1971의 第1條(防火認證)에서 지정되어 있는 용도의 건축물에 關한 공사:

인 때는 全計劃圖書를 提出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가스器具의 설치공사만을 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공사가 영국 가스주식회사 또는 그 감독하에 행해지는 경우는 건축통지나 전계 획도서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4) 建築規則(公認 檢査士等) 1985(部分的으로 완성한 공사에 지방관청은 權限을 갖고있다)의 第18條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施主는 당해 규칙으로 교체하여 그 규칙을 만족 해야한다.

12條 建築通知提出時의 詳細와 計劃圖書.

13條 全計劃圖書

14條 諸工事의 着工通知와 終了通知

第V部: 雜則

15條 排水와 私設下水道의 試驗

16條 材料의 발체시험

17條 地方관청 이외에 의한 建築工事의 監督

18條 法의 無效

19條 處止

20條 移行處置

別表:

別表1-要求

別表2-身體障害者用 施設

別表3-適用이 除外되는 建築物 및 工事

別表4-廢止

第4條와 6條에서는 건축공사에 대한 要求의 規定이 있으며, 具體的인 要求性能은 別表1-要求(Requirements)에 A部에서 L部까지 11項目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다. 그 項目名만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部와 構造(荷重, 地盤의 變動, 불균형한 倒壞)

B部 火災(避難方法, 內部火災擴大, 外部火災擴大)

C部 整地 및 防濕(整地, 危險物, 地下水의 排水, 防濕)

D部 有毒物質(空洞部에 의 充填劑)

E部 遮音(空氣傳播音, 衝擊音)

F部 換氣(換氣方法, 結露)

G部 衛生(食料倉庫, 浴室, 溫水槽, 便所)

H部 排水 및 쓰레기 處理(污水管과 排水設備, 污水溜, 腐敗槽, 沈澱槽, 雨水排水, 쓰레기 集積所)

J部 燃燒裝置(空氣供給, 燃燒生成物의 放出, 建築物의 保護)

K部 階段, 斜路 및 girder(階段 및 斜路, 落下防止, 自動車정지)

L部 燃料와 動力의 節約

이중 防火에 關한 要求는 B部에 規定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要 求	適 用
避難方法 B1 Ⅰ) 火災時에 建築物로부터 屋外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이 가능하며, 안전이 확보되어 필요할 때는 항상 유효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수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要求는 HMSO 刊行의 「建築規則 1985-火災時의 避難方法에 關한 強制的인 Rule」(1985年版)에 規定되어 있는 關連要求에 적합한 것으로만 충족된다.	1. 이 요구는 다음에만 적용한다. (a) 新建築物로서 다음의 경우 Ⅰ. 3층건물 이상의 주택 또는 일부가 3층건물 이상의 주택 Ⅱ. 평평한 지붕을 포함한 것으로 3층건물 이상의 것 Ⅲ. 用途 또는 用途의 一部가 사무실, 또는 Ⅳ. 用途 또는 用途의 一部가 商店 (b) 増築 또는 大規模 改修가 行해지는 住宅으로 3층건물 이상이 된 것 및 (c) 3층건물 이상의 建築物로서 大規模 용도변경후 住宅이 된 것 2. 住宅의 경우 또는 평평한 지붕을 포함한 건물 的 경우, 3층 이상으로부터 사람의 피난을 위해서만 및 사무실이나 상점을 포함한 건축물 的 경우, 사무실 및 상점으로 부터 사람들 的 피난만을 위해서, 피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內壁 內部火災擴大(表面) 天井 B2 建築物內의 火災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壁이나 天井에 이용되고 있는 材料의 表面은 (a) 그 表面에 火災擴大에 대한 충분한 방지성능을 갖고 있으며	

要 求	適 用
(b) 만약 착화한 경우에는 주변에 대하여 妥當한 發熱 速度일 것.	
内部火災擴大(構造) 構造 B3 (1) 火災時에 그 軀體가 적당한 기간 그 耐力를 維持하도록 建築物을 시공해야 한다. (2) 建築物 또는 増築된 建築物은 건축물내의 火災의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區劃化를 해야 한다. (3) 建築物 또는 増축된 建築物의 構造 또는 部材의 은 一部分은 은폐된 곳에서의 火災 및 연기의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Seal 및 區劃化를 해야 한다. (4) 1 이상의 建築物에 共通인 壁體는 火災나 연기의 火災擴大에 대하여 충분한 防止性能을 갖고 있을 것. (5) 前項(4)에서 Terrace House 및 半戶建住宅은 개개의 建築物로 본다.	
外壁 B4 (1) 建築物의 外壁은 壁全體로의 火災擴大 및 建築間의 火災擴大에 대하여 그 建築物의 높이, 용도 및 위치를 考慮한 충분한 防火性能을 갖을 것 (2) 建築物의 지붕은 지붕 전체로의 火災擴大 및 建築間의 火災擴大에 대하여 建築物의 用途 및 위치를 考慮한 충분한 防火性能을 갖을 것	

3. 민간인증 (Private Certification)

今回の 改正 중 하나의 큰 特徴은 民間에 의한 인증制度의 導入이며, 이것은 英國政府가 민간인증의 方法을 통하여 建築業界에 自主規制의 機會를 부여한 것이다. 建築規則에 適合하고 있는 것의 인증은 지금까지의 지방관청에 의하는 것에 추가하여 새로 公認檢査士에 의한 것도 인정되었다. 이것에 관한 規則으로서 圖1처럼, Building(Approved Inspectors etc.) Regulations 1985가 制定되어 민간인증의 方法이 표시되어 있다. 公認檢査士에는

①國務長官에 의해 認可된 法人體와 ②國務長官에 의해 指定된 團體(예를들면 英國建築家協會 등 8團體)에 의해 認可된 個人的 2種類가 있으며, 現在 公認檢査士로서 認定받고 있는 것은 法人團體인 全國住宅協議會(NHBC)뿐이다.

公認檢査士에 의한 審査를 선택한 경우의 手續을 簡單히 說明하면 우선 建築主는 公認檢査士와 連名으로 事前通知書(Initial Notice)를 지방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事前通知書에는 평면도 기타의 參考圖面 외에 保險증서(공사에 보험이 걸려 있는 것)를 첨부해야 한

다. 또 公認檢査士는 小規模工事を 제외 時間的 또는 經濟的 利益을 받아서는 않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관청은 通知書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以内に 그것을 受諾 또는 기각 해야 한다. 10일 以内に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事前通知는 受諾된 것으로 된다. 通知가 受諾된 後에 工事は 着工되며, 公認檢査士가 그 工事を 監督하여 全責任을 지게 된다. 工事が 終了한 時点에서 公認檢査士는 工事的 完了증서를 提出하고 建物의 使用이 可能하게 된다. 단, 現在の 形편으로는 公認檢査士 制度는 保險과의 이해관계로 아직 軌道에 오르 지않는 상태이다.

〈參考文獻〉

1. The Building Act 1984.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2. The Building Regulation 1985.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3. The Building (Approved Inspectors. etc) Regulation 1985.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4. "The Building Regulations Explained & Illustrated" V.POWELL-SMITH and M.J.BILLINGTON. Collins.
5. 火災科學海外情報 Series No. 10-1 「英國에서의 新建築規制方式(4의 第1章부터 4章까지를 번역한 것)」
東京理科學大學火災科學研究所 *